

i-리그 운영 지침

(사)대한테니스협회

(사)대한테니스협회 i-리그 운영 지침

제정	2023. 05. 24.
지침 전면개정	2026. 00. 00.

제1조(근거) 이 지침은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이하"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개최하는 '스포츠클럽디비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는 지침이다.

제2조(용어의정의)

1. "리그"

리그란 이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i-리그의 개별 운영 단위를 말한다.

2. "총괄운영관"

총괄운영관이란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전반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 시·도 단위의 사업을 총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인력의 선발·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장한다.

3. "시·도 관리자"

시·도 관리자란 총괄운영관의 지휘 하에 시·도 단위의 예산 집행, 행정 정산, 각종 업무 일지 수합 및 보고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실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리그운영관"

리그운영관이란 각 리그의 경기 운영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심판 및 지도자"

심판 및 지도자란 경기 규칙에 따라 판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요원”

운영요원이란 경기 운영 보조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클럽”

클럽이란 KTA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테니스 클럽을 말한다.

8. “팀”

“팀”이란 클럽 소속으로 연령 부서별 리그에 참가 신청한 3인 이상의 선수 집단을 말한다.

9. “선수”

선수란 전문선수와 동호인(유청소년) 선수로 구분하며, 동호인(유청소년) 선수는 KTA 통합시스템에 가입하고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마친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통합시스템”

KTA 통합시스템이란 협회가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운영을 위해 개발·운영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명칭)

① 리그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년 테니스(시·도) i-리그’

제4조(기간) ① 본 리그는 협회가 정하여 공문으로 고지하는 기간에 개최한다.

② 각 지역별 3라운드로 운영하되, 운영 지역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

단, 7회차 중 1회차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③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본 회로 일정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장소) ① 지역별 리그운영본부에서 지정한 테니스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② 장소를 변경할 경우 대한테니스협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제6조(참가 및 출전자격) ① 본 리그는 만18세 이하의 전문체육 선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대상: 학교클럽(방과후 스포츠 활동), 지역 아카데미, 지역클럽,시·군·구협회 소속 유청소년

② KTA 통합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등록 동호인 테니스 팀 및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신청) ① 본 리그는 KTA 통합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기인 및 클럽, 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리그 개설 및 참가 신청을 완료 해야 한다.

② 참가신청은 인원에 제한 없으나, 부서별 최소 참가 인원(1팀 3명 이상) 충족 필수로 한다.

③ 분할팀 참가: 1팀에서 2개 이상 클럽으로 분할 참가 가능, 최소 인원 충족 필수로 한다.

제8조(참가비) ① i-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팀은 KTA 통합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 한다.

② 1차전 경기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팀 및 소속 선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i-리그에 참여를 금지한다.

제9조(리그의 취소) ① 본 리그의 참가팀 수 미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등의 개최 불가능 발생 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재량에 따라 리그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ITF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지역별 특별한 사항

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경기는 슈퍼타이브레이크로 매치당 10POINT 3SET으로 진행한다.

기본 순서: 1set 단식 - 2set 단식 - 3set 복식

단, 각 리그운영본부의 결정으로 단-복-단 순서 변경 가능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수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세트는 공오더로 처리한다.

제11조(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리그의 대진과 경기방식, 일정은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 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변경될 수 있다.

③ 혹서기 리그 운영 시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낮시간(12:00~16:00)을 지양하며, 16시 이후 야간경기 운영을 권장한다. 단, 실내경기가 가능할 경우, 각 참가팀 및 클럽의 동의를 얻어 리그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기장 및 경기 사용구) ① 리그 경기장 및 경기구는 ITF Play Tennis 국제 기준에 따른다.

② 연령별 경기장 규격 및 볼·라켓 기준은 다음과 같다.

U-6·U-8: Red 코트(L11*W5~6) / Red볼/ 19~21인치 라켓

U-10: Red~Orange 코트(L18*W6.5~8.23) / Red~Orange볼/ 21~23인치 라켓

U-12: Orange~Green 코트 (L18*W6.5~8.23, Full) / Orange~Green볼/ 23~25인치 라켓

U-15·U-18: Orange~Green 코트(Full) / Orange~Green볼/ 25인치 라켓

③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입찰 결정된 공식 브랜드의 사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경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승자 결정) ① 본 리그는 순위 및 승자 결정을 공식 기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단, 지역 주관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결정 방식으로 자체 집계를 진행하여 결과는 내부적으로 보관한다.

② 각 팀의 순위는 다승> 승자승> 다득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운영인력의 정의) ① 총괄관리자

총괄관리자란 KTA에서 전체 i-리그를 총괄하여 기획, 실행 및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총괄관리자는 각 시·도의 리그를 감독하는 시·도 관리자 및 총괄운영관을 관리한다.

② 시·도 관리자

시·도 관리자란 각 시·도 내 i-리그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리그운영관

리그운영관 선발 권한은 총괄운영관에게 있으며,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리그운영관은 각 시·도 관리자가 지정한 리그를 맡아 준비부터 결과 보고까지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리그운영관이 담당할 수 있는 리그 수는 리그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리그운영관은 1일에 1개 리그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그운영관은 리그 진행 중 경기장에 상시 배치되어야 한다.

리그운영관은 협회가 지정한 양식의 리그 결과 보고를 매 라운드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심판 및 지도자

심판 및 지도자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정하는 심판,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지도자, 매직테니스 자격증을 보유하고 리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심판 및 지도자는 경기장에 배치되어 해당 리그의 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심판 및 지도자는 1일에 1개 리그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운영요원

운영요원은 경기장에 배치되어 안전 관리 및 경기운영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요원은 1일에 1개 리그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운영요원을 수행할 수 없다.

제15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출전 선수는 반드시 대회참가 ID카드 혹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도착한 후 리그운영관으로부터 사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될 경우 점인할 수 없다.

② 각 팀 유니폼에 담배, 주류 등 유·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부착은 불가하다.

제16조(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본 리그는 유·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서, 경기 중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심판은 경기 중 ITF Rules of Tennis 의 Code of Conduct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기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Warning)
2. 포인트 페널티(Point Penalty)
3. 게임 페널티(Game Penalty)
4. 디폴트(Default: 실격·몰수패)

③ 유·청소년 선수의 행위에 대한 일차적 관리 책임은 지도자 및 보호자에게 있으며, 심판 또는 리그운영관은 필요 시 지도자 및 보호자를 통해 선수를 지도·교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리그운영관은 경기 외 행정사항 및 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기 전 선수확인시 부정선수가 확인된 경우

- 해당 선수는 즉시 제외하며, 경기는 정상 진행한다.
- 해당 사실은 공모사업위원회에 보고한다.

2. 경기 개시 후 일정 시간 내 출전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며, 스코어는 10:0, 세트스코어는 3:0으로 처리한다.

3. 경기 중 또는 종료 후 부정선수가 확인된 경우

-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 해당 사안은 공모사업위원회에 보고하며, 팀에 대한 후속 조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대리 출전자(부정선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선수의 출전 경기 및 소속 팀의 관련 경기는 전부 몰수 처리하며, 시상 또한 취소되며 해당 사안은 공모사업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폭언, 폭력, 경기 조작, 성희롱·차별 행위 등 경기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관은 해당 사안을 공모사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관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징계 필요성을 검토한 후 대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회부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미성년자 선수에게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관은 해당 선수의 지도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몰수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10:0, 세트스코어 3:0으로 처리하며, 승자는 경기장 내에서 지도자 또는 운영진의 확인을 거쳐 선언한다.

⑧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련 규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17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해당 리그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및 지도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선수단 안전)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참가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주최 및 주관 측에서는 선수단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선수는 가입된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④ ①, ②, ③항 및 참가선수, 참가팀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제19조(기타 유의사항) 운영인력(운영요원, 심판 및 지도자, 리그운영관)의 경우

동일 시군구에서 다른 종별 혹은 리그 진행 시, 겸직이 가능하나 같은 날 이 중수급은 불가능하다.

제20조(미성년자 보호) ① 운영인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리그 운영 중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리그운영관은 즉시 관계기관(수사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및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대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경기 관리 조치 또는 공정위 회부 시, 리그운영관은 해당 선수의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i-리그는 연간7회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7회차 중1회차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공예 체험·뉴스포츠 등 체험형 프로그램
2. 프로선수 일일 클리닉
3. 가족체험교실 등 인성·감성 함양 프로그램

제22조(회계 원칙) 회계 원칙은 대한체육회 예산집행지침과 기금지원 사업 정산안내에 따른다.

부 칙(2023. 5. 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0. 00.)

(시행일) ① 이 지침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제정 이후 개정은 협회장의 승인으로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시행 전 KTA 통합시스템 및 협회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참가자에게 고지한다.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ITF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